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96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11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96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20.
- (3) 회 부 일 : 2025. 6.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발생한 달부터 휴직이 끝나는 달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됨.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도 전액 부담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0.7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생

국가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예컨대 일본은 육아 및 개호휴직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한 경우,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조 개정 및 제100조의5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1)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중인 경우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면서(안 제91조제1항제1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 ----- ----- ----- ----- ----- -----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 ⑥ (생략)

현행	개정안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 7.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략)	1.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육아휴직 중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2)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3)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에서 정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육아휴직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없음.⁵⁾

-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외한다)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

2)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4)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을 뺀 소득

5)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이 육아휴직 직전에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면 그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반액씩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함.⁶⁾

□ 그런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노령연금액의 실질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에 비례하게끔 설계되어 있는바,⁷⁾

육아휴직 중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데 따른 기여이력 상실이 해당 육아휴직자의 노후소득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육아휴직자는 현행법 제92조제1항제2호⁸⁾에 따른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중에 내지 아니하였던 연금보험료를 복직 후 등 본인이 원하는 때에 납부할 수도 있지만,

지난 6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연평균 약 19.3만명) 대비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한 인원(연평균 약 1,230명)은 약 0.64%에 불과하여 이들의 기여이력 상실분이 보충되도록 하는 정책적

6) 예를 들어, A사 소속 근로자인 甲의 육아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고, A사가 육아휴직 중인 甲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외에 육아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인 18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A사의 사업주)와 근로자(甲)는 각각 18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25년도 보험료를 9% 적용 시 162,000원)의 반액씩을 납부하여야 함.

7)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각 호 생략)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8)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 최근 6년간 육아휴직자 중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 인원 >

(단위: 명, %)

구 분	육아휴직 납부예외자 (A)	추후 납부 신청 인원 (B)	비율 (B/A)
6개년 평균	193,090	1,230	0.64
2019	164,472	678	0.41
2020	175,852	2,257	1.28
2021	181,388	1,866	0.03
2022	202,257	1,040	0.51
2023	210,677	602	0.29
2024	223,898	942	0.42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에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함으로써 육아휴직 중에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도록 하되,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반액은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단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은 사용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육아휴직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⁹⁾만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써, 지역가입자¹⁰⁾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에서 ‘육아휴직’이 제외되면 육아휴직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임금 없이 생활하는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셋째,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¹¹⁾ 전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하는데, 육아휴직 중에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 기여금의 원천공제 납부가 제한되므로, 안 제9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징수할지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1)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넷째, 안 제91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 중 ‘휴직’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하면서 소괄호가 한 차례 사용되었고, ‘육아휴직’을 약칭하면서 소괄호가 한 차례 더 사용되는 등 이중괄호가 잘못 적용된바, 소괄호가 있는 법문을 묶을 때 통상 대괄호를 이용하는 점을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¹²⁾ 안 제100조의5제1항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의 제3조제1항제5호¹³⁾에서 이미 “가입자”로 약칭되었으므로 이를 반영·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섯째, 안 부칙에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만이 정하여져 있는데,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지 등의 적용례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가 안 제100조의5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게 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315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안 제100조의5제2항이 육아휴직자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육아휴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바, 향후 정하여질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1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년 5월, 1024-1025면.

13)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안 제100조의5(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전망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억원)	2,445	2,825	3,258	3,747	4,302	16,576	3,315
연간 지원 개월 수(개월)	1,518,711	1,593,660	1,672,308	1,754,837	1,841,439	-	-
평균 통상 임금액(백만원)	3.4	3.5	3.7	3.9	4.1	-	-
보험료율(%)	10.0	10.5	11.0	11.5	12.0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가가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5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 중에도 가입기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육아휴직 중 근로자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신청할 수 있게 한 현행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나 업종·규모 등 사업장 여건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¹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

14) 4인 이하 사업장 18.8% vs. 300인 이상 사업장 37.4% (출처: 통계청, 2023년 육아휴직통계)